「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신·구 조문 대비표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8>

현 행	개 정 안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5. (담보가치 산정)	5. (담보가치 산정)
가. 은행은 주택의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u>아파트가 아닌</u>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서 신설>	가50세대 미만 아파트(한국부동산원 산정가격 및 KB부동산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2. (시가 산정방식)

나.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취급시 가목에 따른 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다 음 평가액을 활용하여 고가주 택 및 초고가아파트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1) (생략)

(2)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 가한 가격. 다만,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가격 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 관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통 제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일 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 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 위원회 등 별도의 내부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 여야 한다.

5-2. (시가 산정방식)

나	
 .	
(1) (현행과 같음)	
(2) <u>50세대 미만 여</u>	<u> </u>
(한국부동산원 산정가격	및
KB부동산 시세가 없는	
에 한함),	